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13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의안 번호	4613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 제 복 지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경제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상정 및 심사.의결 (2026.9.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류옥화)

○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따라

○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을 안 제3조제2항3호에 포함하도록 하고,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3조의2)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를 위해 연령대별 또는 성별에 따라 자살 동기나 위험 요인이 다르므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법적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 본 개정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이나 개정취지에 부합하며, 우리구의 자살예방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 정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수립의 법적 기반이 탄탄해지고 위원회를 통한 민관 협력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13

제출연월일 : 2026. 8. 27.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안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합의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 수용

-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 성별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한 개선의견 반영
-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개선의견 반영

5) 입법예고 : 2026. 7. 9. ~ 7. 29.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살예방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경제 및 일자리·재난안전·자살예방 업

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구 관내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정신건강・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생략)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성별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자살예방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경제 및 일자리·재난안전·자살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구 관내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정신건강·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4. 그 밖에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관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8., 2019. 1. 15.>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